



소통 변화 활력, 군민과 함께

2024. 2. 7.(수)

면정회보

[제2024-3호]

양보면

목 차

[총무부서]

- 인사발령 사항(2024. 2. 6.) 1
- ‘양보 면민의 날’ 지정 의견 수렴 1
- 치매 대상자 조호물품 사업안내 2
-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2
- 2024년 설 맞이 국토 대 청소 2
-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안내 3

[주민생활지원부서]

- 설명절 연휴기간 양보면 복지목욕탕 운영 안내 4
- 경로당·마을회관 내 소화기 관리 철저 4
- 설명절 이웃돕기 위문품 전달 5
- 2024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수요조사 5
- 취약계층 위기가구 안부확인 및 발굴 협조 6

[산업경제부서]

-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안내 7
- 2024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8
-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9
- 설 맞이 하동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홍보 9
-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10
-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안내 11
- 2024년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12
- 2024년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수요조사 실시 13
- 산불예방 홍보 및 불법 소각 금지 안내 14
- 산불 저감을 위한 산연접지 인화물질제거 작업 추진 14
- 2024년도 달라진 「농업경영체 등록제도」 안내 16

[민원부서]

-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 17

총무담당

1 인사발령 사항 (2024. 2. 6.)

권보순(880-6303)

○ 전입현황

연번	현 직		성명	비고
	직위(직급)	부서		
1	민원담당	민원부서	전혜전	
2	지방행정주사보	총무부서	정슬기	

○ 전출현황

연번	현 직		성명	발령전부서
	직위(직급)	현 부서		
1	금성면 민원담당	금성면 민원부서	윤미자	민원담당
2	지방행정서기보	지역활력추진단	여선모	총무계

2 '양보 면민의 날' 지정 의견 수렴

권보순(880-6303)

○ 목 적 : 양보면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양보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 양보면민의 날을 지정하여 면민 단합 계기 마련

○ 검토사항 : 4월 또는 10월 초

□ 4월 개최시

- 장점 : 겹벚꽃 개화기에 따라 아름다운 배경의 체육대회 개최로 주민 관심도 상승 및 관광객 추가 유입
- 단점 : 면민의 날과 선거 일정이 겹칠시 선거 업무로 인하여 면사무소 직원의 지원 부재로 면민의 날 행사 준비 차질 우려

○ 4월 일정

- 4월 10일(수) 국회의원 선거 <사전투표 4. 5.(금) ~ 4. 6.(토)>
- 4월 15일(월) 하동 군민의 날
- 양보중학교 총동창회 등 중복

□ 10월 초 개최시

- 장점 : 농번기를 피해 여유가 있는 시기이며 체육 활동하기 좋은 기후
- 10월 일정
 - 토지문학제 행사(일정 미정)

○ 협조사항 : 2024년 2월 16일(금)까지 제출 요청

붙임 설문조사 및 서명부 1부.

3 치매 대상자 조호물품 사업안내

권보순(880-6305)

- 사업취지 :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
 -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
 -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
 - 사업내용
 - 지급기간 : 최대 1년까지 무료 제공
 - 지급품목 : 요실금팬티, 물티슈, 허리보호대, 식사용 앞치마, 지팡이, 미끄럼 방지 양말, 미끄럼방지 매트, 노린스 샴푸 등
 - 신청방법 : 본인 및 가족 또는 위임자가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
 - 신청서류 : 치매 대상자와 신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치매약 처방전
- ※ 1회 방문 시 4개월분 지급(연 3회 방문)

4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

권보순(880-6305)

- 사업취지 : 영농폐비닐,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시설 구축
- 신청기간 : 2024. 2. 16.(금) 까지
- 사업량 : 공동집하장 설치 4개소 (군)
- 대상장소 : 차량 진입이 쉬운 장소(도로변 제외)
- 신청방법 : 담당자 문의

5 2024년 설 맞이 국토 대 청소

권보순(880-6305)

- 사업취지 :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들과 관광객들에게 우리면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- 기 간 : 2024. 2. 8.(목)까지
- 청소구역 : 각 마을 주변 도로 및 관광지
- 대상장소 : 차량 진입이 쉬운 장소(도로변 제외)
- 협조사항 : 청소시 사진촬영

6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오수정(880-6304)

- 사업내용 :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(3층 이하, 연면적 500㎡ 이하) 주거약자용(노인 및 한부모가정·저소득층 등) 주택 안전점검
- 지원물량 : 각 읍·면당 5가구
- 신청자격 :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(건축물관리대장 존재, 공부 상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한함)
- 비용지원 :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
- 신청기간 : 2024. 2. 5.(월) ~ 3. 29.(금)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(건축과 및 면사무소)

주민생활지원담당

1 설명절 연휴기간 양보면 복지목욕탕 운영 안내

김수정(880-6327)

- 연휴기간 : 2024. 2. 9.(금) ~ 2. 12.(월)
- 운영현황 :

구분	2.9(금)	2.10(토)	2.11(일)	2.12(월)	비고
			설명절		
운영여부	운영	휴무	휴무	운영	

- 협조사항 : 설 연휴기간 양보면 복지목욕탕 운영상황 홍보 협조

2 경로당·마을회관 내 소화기 관리 철저

김수정(880-6327)

- 근거: 「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(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)
- 소화기 수명 : 최대 10년
- 관리방법
 - ▶ 눈에 띄면서,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
 - ▶ 압력계가 녹색을 벗어나거나, 훼손시 교체
 - ▶ 권장사용기한(10년) 초과 노후 소화기 교체
- 폐기방법 :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후 처리 ※ 수수료 3,000원

※ 폐소화기 처리 및 재활용 계획(한시적)

- ▶ 추진사유 : 폐소화기 처리시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하동군, 하동소방서, 하동빛드림본부가 함께 수거한 폐소화기를 전문처리업체에 기증하여 처리 및 재활용
- ▶ 기 한 : 2024. 2. 8.(목)까지
- ▶ 폐기대상 : 권장사용기한(10년) 초과, 혹은 압력이 낮아진 소화기
- ▶ 문 의 : 양보면사무소 총무부서(☎880-6305)

- 협조사항 : 권장사용기한(10년) 초과 및 불량소화기 폐기 및 교체

3 설명절 이웃돕기 위문품 전달

김진아(880-6328)

- 전달일자 : 2024. 2. 7.(수)
- 위 문 품 : 백미 10kg 70포 (금이백만원 상당)

구분	기탁자	기탁물품	수량(포)	금액
계	2건		70	
1	양보면주민자치회(회장 이종원)	백미 10KG	35	100만원 상당
2	양보면기관단체협의회(회장 김명숙)	백미 10KG	35	100만원 상당

- 위문대상 : 저소득 어르신 70세대
- 배정내역 : 마을별 인구수 반영, 2~3포 배부

연번	구분	배정내역			비고
		마을수	위문배정 (세대수)	계 (세대수)	
계		28		70	
1	운산, 수척, 지내, 진암, 하장암, 중하쌍, 원양, 하성, 서촌, 구청, 신정, 세곡, 예성, 화촌	14	3	42	
2	그 외 14개 마을	14	2	28	

4 2024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수요조사

김진아(880-6328)

- 신청기한 : 2024. 2. 8.(목)
- 개 요 :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쓰레기 방치로 감염병 우려, 화재위험 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
 - ※ 저장강박 :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,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
- 사 업 비 : 하동군 20,000천원(1가구당 최대 2,000천원)
- 자격요건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긴급복지지원가구, 한부모가족, 등록장애인가구, 기초연금 수급가구, 영유아 보육가구,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등
- 사업대상
 - 집안에 쓰레기를 저장해 개인위생 및 건강 문제가 심각한 가구
 - 악취 및 높은 화재위험으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유발하는 가구
- 사업내용 : 폐기물 수거 및 청소·정리, 정신건강 상담 치료 연계, 사후관리
- 유의사항
 - 고의(계으름 등)로 쓰레기를 방치하는 가구
 - 유사사업 기존 수혜 가구(단, 반복적 민원 가구는 예외)
 -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가구의 본인 동의 필수

- 발굴기간 : 연중
- 발굴대상
 - 독거노인 등 고독사 고위험 가구
 - 단전, 단가스, 전기요금 체납가구
 -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불일치로 복지서비스 미지원 가구
 -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, 장애인, 정신질환 등 취약가구
 - 오랜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
 - 65세 이상 노인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1개월 이상 입원(소)하여 퇴원(소)한 가구
- 지원내용 : 긴급복지지원,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·민간자원 지원 및 연계
- 문 의 처 : 양보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(055-880-6328~7)
- 협조사항 : 위기가구 안부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철저

산업경제담당

1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안내

임가현(880-6314)

⇒ 중전의 논활용(논이모작) 직불제를 ‘전략작물 직불제’ 로 확대 개편

○ 신청기간 : (동계) 2024. 2. 1. ~ 3. 29. / (하계) 2024. 2. 1. ~ 5. 31.

○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
※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을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·면에 신청

○ 신청대상 : 0.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(법인, 들녘경영체

○ 대상품목 : ①동계, ②하계, ③이모작

①(동계) 논(畓)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

▶ 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귀리, 감자 등

* 다만,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

▶ 알팔파, 청예보리 등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**【별표1】**의 목초, 풋베기 사료작물

* 사료작물 : (목초) 알팔파, 오차드그라스,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 34종

(풋베기사료) 수단그라스, 청예밀, 청예보리, 청예벼, 청예옥수수, 청예피, 청예호밀 등

②(하계) 논(畓)에서 재배하는 두류, 가루쌀,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

▶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

* 두류 : 콩, 팥, 녹두, 완두, 강낭콩, 동부, 잠두, 칼콩, 제비콩, 병아리콩, 렌틸콩, 기타두류(6~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)

▶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(채종단지, 시범단지 등 포함)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

▶ 하계조사료는 총채벼(청예벼), 옥수수 등 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 **【별표1】**의 곡물,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

* 하계조사료 신청대상농지 : '23년 하계조사료 품목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, '18~'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및 '21~'23년 기간 중 벼재배 자율감축 협약(공공비축미 인센티브)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, '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

③(이모작) 논(畓)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 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

- 지급단가 : ha당 50만원 ~ 430만원
 - (동계) 밀·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당 50만 원
 - (하계) 두류·가루쌀 ha당 200만원, 식용옥수수 100만 원, 하계조사료 430만원
 - (이모작) 동계 밀 또는 조사료 +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
- 협조사항 : 전년도 신청자의 경우 마을별로 신청서 공문함 배부되었으며, 신규 신청자의 경우 면사무소 방문 신청 안내

2 2024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임가현(880-6314)

- 신청기간 : 2024. 2. 1. ~ 5. 31.
-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 - ※ 농지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희망하는 곳에서 신청가능
- 신청대상 : ①(신규) ‘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‘24년 타작물* 재배 또는 휴경하고자 하는 필지 ②(기존) ‘23년 전락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필지

*일반작물(옥수수, 들깨, 참깨 등), 두류, 하계조사료 등

<‘23년 벼 재배여부 확인 방법 >

- ☞ ‘24년 신규농가의 경우 ‘가~마’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
- 가. (‘23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)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, 농기자재, 시설 등의 사업 참여
- 나. (벼 재배보험 가입) 해당 필지가 ‘23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
- 다. (벼 재해복구비 수령) 해당 필지가 ‘22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
- 라. (‘23년 공공비축미 배정) ‘23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 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
- 마. (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) **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(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)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(별첨 서식)**

- 인센티브 :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, 타작물 재배 관련사업 지원 우대 등

< 작목별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현황 >

일반작물	두류	하계조사료·꽃거름	휴경
300포대/ha	(150포대/ha)	(300포대/ha)	(300포대/ha)

- 안내사항 :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안내

3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

임가현(880-6314)

- 신청기간 : 2024. 2. 12.(월) ~ 4. 30.(화)
-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 - ※ 농지가 2개 이상 읍면(시군)에 있을 경우, 농지가 많은 읍면(시군)에 신청
-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소지·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 - ※ 단, '24. 8. 30. 기준 농업경영체(재배품목 벼) 등록된 농가에 한함(사료용 벼 제외)

※ 제외대상(공익직불정보 이용)

-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-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,000㎡ 미만인 자
- 「농지법」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(해당필지만 제외)
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(해당 필지만 제외)
- '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

- 지원범위 : 1,000㎡ 이상 ~ 40,000㎡ 이하
- 지원단가 : 사업 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(10월 예정)
 - ※ 전년도 지원단가 : ㎡당 58.5원
- 제출서류
 - 공익직불금 신청자 : 신청서
 -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: ①신청서, ②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 *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: 사후검증
- 협조사항
 - 전년도 신청자의 경우 마을별로 신청서 배부 예정이므로, 벼 경작필지 등 확인하여 제출
 - 전년도 미신청자 또는 주소지 타 읍면·농지소재지 양보면인 경우 기한 내 면사무소 방문 신청 안내

4 설 맞이 하동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홍보

임가현(880-6314)

구 분	모바일	종이	비고
판매기간	2024. 2. 1. ~ 2. 29.	2024. 1. 22. ~ 2. 29.	예산 소진시까지
구매한도	50만원	20만원	
할 인 율	10 → 15%	10%	
구 매 처	간편 결제 앱, 은행 앱	농협은행 및 지역농·축협	

○ 품목별 가입시기 : 하단 표 참고

- 과수 4종(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) : 2024. 2. 29.(목)까지

○ 가입장소 : 해당작목 재배필지 소재지 지역농협

<참고>

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

구 분	사업지역	가입기간
사과·배·단감·뽕은감	전국	1월~2월
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(수박·딸기·오이·토마토·참외·풋고추·호박·국화·장미·파프리카·멜론·상추·부추·시금치·배추·가지·파·무·백합·카네이션·미나리·쭈갓·감자)	전국	2월~11월
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(양송이·새송이·표고·느타리)	전국	2월~11월
밤·대추·감귤·고추·인삼(1형)	전국	4월~5월
벼·(사료용)벼·고구마·옥수수·(사료용) 옥수수·고랭지배추·고랭지무·대파	전국	4월~6월
(가루쌀)벼	전국	4월~7월
고랭지감자	전국	5월~6월
참다래·콩·팥	전국	6월~7월
당근	강원, 경북, 경남, 제주	7월~8월
가을감자	전국	8월~10월
시금치	전국	9월~11월
차	경남(하동), 전남(보성, 광양, 구례)	9월~11월
마늘	전국	(난지형 남도종)9월~10월 (난지형)10월 (한지형)10월~11월
밀·양파·인삼(2형)	전국	10월~11월
보리	전국	10월~12월
매실·자두·포도·복숭아·오미자	전국	11월
두릅	전북(순창), 경남(하동), 전남(광양, 순천)	11월

※

구체적인 일 단위 가입일정은 ①농금원이 보험 판매 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, ②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(지역농협)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음

※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금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지역대리점(지역농협)을 통해 홍보

※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 가입이 일시 중지될 수 있음

- 신청기간 : 2024. 2. 5.(월) ~ 2. 29.(목)
- 대상품종 : 17품종(토란, 메밀, 울무, 조, 수수, 기장, 동부, 이팍, 홍화, 맥문동, 우렁콩, 부채콩, 선비잡이콩, 아주까리콩, 염주, 앓은뱅이 밀)
- 지급단가 : 250원/㎡ (앓은뱅이밀 : 200원/㎡)
- 지급상한액 : 농가당 150만원 이내
 - 앓은뱅이밀 지급상한액 : 농가당 100만원 이내
-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: 농가당 330㎡ 이상
 - 여러 필지에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330㎡ 미만이라도 동일 품목에 대해 인접한 필지와의 재배면적 합이 330㎡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
- 지원대상 농지 : 농지대장,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
- 신청제외 및 지급방법
 -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목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**5년간만 지급**
 -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%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
(단 가뭄 등 불가피한 천재지변의 경우 50% 미만 수확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)
- 지원제외
 -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경우
 - 시비,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
 -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
 -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 330㎡ 미만인 경우

- 사업기간 : 2024. 12. 20.까지
 - 2023년도에 입양한 자도 입양 후 6개월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
 -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
 -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사업량 : 20마리
- 지원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
 - 입양비 지출액이 250,000원 이상일 경우 150,000원 지원
 - 입양비 지출액이 250,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%까지 지원
- 지원내용 : 동물입양시 소요되는 비용
 -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
- 사업대상
 - 하동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(내장형)을 완료한 자
 - 동물사랑배움터의 ‘입양예정자교육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
- 입양문의 및 접수처 : 하동군 농축산과(055-880-2675)
하동군 유기동물보호소(055-880-2677)

8 2024년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수요조사 실시

박은지(880-6313)

- 신청기한 : 2024. 2. 13.(월)까지
- 지원내용 : 신규 사료구매(농신보 가능)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(농신보 불가, 담보대출 가능)
- 지원조건 : 용자 100%, 금리 1.8%, 2년 거치 일시 상환
-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
 - 축종별 ‘농가당지원한도’ 와 ‘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’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
 -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(대출잔액 기준)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
 - 농가는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해 사료구매 대출잔액을 확인한 후, 지원 가능한도 내에서 정확히 신청(한도 초과하여 수요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농가당 지원한도	마리당 지원단가	전제조건	비고 (금리 및 지원조건)
한육우	일반	600,000	<u>2,600</u>	해당없음	1.8%, 2년 일시상환
	암소비육지원	900,000	<u>3,290</u>		"
낙농	일반	600,000	<u>3,500</u>	"	"
양돈	일반	600,000	300	해당없음	"
	구제역, ASF, 모돈이력제	900,000	<u>390</u>		"
산란계	일반	600,000	<u>13</u>	해당없음	"
	AI	900,000	<u>17</u>		"
육계	일반	600,000	<u>5</u>	해당없음	"
	AI	900,000	<u>7</u>		"
오리 (거위, 칠면조, 기러기)	일반	600,000	<u>9</u>	해당없음	"
	AI	900,000	<u>11</u>		"
사슴	일반	90,000	900	해당없음	"
산양 (면양, 염소)	일반	90,000	180		"
꿀벌	일반	90,000	군당 150	해당없음	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

※ 기타가축 지원단가는 산업계로 문의

- 대출기관 : 관내 지역농협 · 축협
- 제출서류 : 신청서(면사무소 비치), 신용조사서(대출기관 발급)

9 산불예방 홍보 및 불법 소각 금지 안내

박은지(880-6313)

○ 안내사항

- 봄철 영농기 전 농부산물, 논·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 일절 금지
(산 또는 산연접지(100m이내) 소각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)
- 산연접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 완전히 소각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며 산림이나 연접지에 버리는 행위 일절 금지
- 산림에서는 인화성 물질(라이터 등) 소지 및 흡연 금지

○ 주요 처벌내용

- 산림실화죄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산림방화죄 :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
-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: 과태료 최대 50만원 이하(3회이상 위반 시)
-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: 과태료 10만원 이하
- 산림 내에서 담배꽂초를 버린 자 : 과태료 최대 20만원 이하(3회이상 위반 시)

10 산불 저감을 위한 산연접지 인화물질제거 작업 추진 박은지(880-6313)

○ 사업내용

-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 농부산물 파쇄
-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작업

○ 실행방법 : 산불감시원 8명 현장작업

○ 협조사항

-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신청 홍보
- 파쇄 신청시 끈, 망 제거 홍보

화목보일러 이용안전수칙

✓ **화목보일러는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 설치해 주세요.**

- ▶ 보일러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경우 내부의 불티나 화염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▶ 가연성 바닥재는 화목보일러의 복사열이나 튀어나온 불티로 인해 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
✓ **라이터·부탄가스·나무 연료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은 화목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 주세요.**

- ▶ 화목보일러로 인해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복사열에 의해 나무 등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.
- ▶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부탄가스 등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. 보일러와 먼 곳에 보관 하세요

✓ **폐가구나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지 마시고, 잘 건조된 나무 연료만 적정량 투입해 주세요.**

- ▶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가구·생활쓰레기를 태울 경우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▶ 덜 건조된 나무는 불완전 연소되어 연통에 그을음이 쌓이게 되며,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.

✓ **연통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.**

- ▶ 연통 내부에 그을음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그을음에 불이 붙어 연통이 가열될 수 있습니다.
- ▶ 이 경우, 주변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.(3개월 1회)

✓ **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세요.**

- ▶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세요.
- ▶ 화재감지기·간이스프링클러·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 두면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2024년부터
확 달라진 「농업경영체 등록제도」 안내

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: ☎ 1644-8778 /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 : ☎ 055-884-6060

2024년 2월 17일부터
농지법 위반 임대차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합니다.

◆ 사인(私人) 간 불법 임대차 농지는 등록 제한됩니다.

- [제도개선]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

현행	개정안 (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)
제2조(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) <신설>	제2조의2(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) 가.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 나.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 수탁된 농지 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된 농지

- [시행시기] 2024년 2월 17일부터
- [적용시점]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및 유효기간(3년) 갱신 시
- [대상농지] 사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(전국 약 244만 필지 추정)

(예시) 농업경영체 등록이 10필지 되어있는데 그 중 5필지가 사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이다. 품목변경을 위해 변경신청할 때 등록유지 가능한지?

☞ 2024.2.17. 이후 변경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차농지의 경우, 농지대장에 임대차현황이 등재되어 있어야 등록유지가 가능합니다.

◆ 거짓·부정등록자 및 거짓 확인·증명자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.

위반행위	현행	개정	관련규정
거짓·부정등록자	과태료 (100만원 이하)	벌금 (500만원 이하)	법 제31조의2제2항
거짓·부정등록 확인·증명자	-	과태료 (100만원 이하)	법 제33조제1항제2호

민원담당

1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

성인(880-6323)

- 우리면 체납세 현황(2024. 2. 5. 현재) : 446건/ 26,335천원
- 협조사항
 - 체납고지서 반송 대상자, 연락처 누락자 등 체납자 실태조사시 협조
 -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자동이체 신청 홍보